

## V. 참고자료

기 정부에서 한우사업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책에 대하여 모든 농가가 알고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이 한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본다.

### 정부지원 한우사업

#### □ 한우개량농가 육성사업

가. 목적 : 개량에 의한 한우능력 향상 및 우량종우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우량한우 보호와 순수 혈통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지원내용

- 등록우 관리에 따른 관리비 지원 - 등록우 관리단체에 지원  
36,000원/두/년(2000년이후 기초등록우는 관리두수에서 제외, 그러나 기초등록우에서 생산되는 혈통등록우부터는 관리두수에 편입 지원됨)
- 등록우에 대한 사료지원 - 농가에 지원
  - 기초등록우에 대한 지원 : 35,000원(단, 99년말까지 등록된 두수에 한하여 지급되고 2000년부터는 지급이 안됨)
  - 혈통등록우에 대한 지원 : 50,000원
  - 고등등록우에 대한 지원 : 70,000원

다. 지원대상

인공수정을 통하여 계획교배를 실시하는 한우등록 농가

라. 문의처 : 관할 지역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02-588-9301~5)

#### □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가. 목적 : 한우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90만원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참여농가에 지급 단, 안정기준 가격은 사육두수와 생산비용 변동정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조정.

나. 사업 참여방법

청약기간내에 목장주소를 관할하는 지역축협에 1두당 1만원의 가입비와 기타 구비서류를 지참

하여 신청한다.

단, 당해 연도에 혜택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1두당 가입비 1만원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하다.

#### 라. 주의사항

- 송아지 생산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나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보전금을 받을수 없으니 계약하는 농가는 송아지 생산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축협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 송아지 확인시 어미소가 없으면 계약우에서 생산된 송아지 인지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그 송아지는 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오니 관할축협에서 송아지 확인시까지 어미소의 판매를 보류하셔야 합니다.

마. 문의처 : 관할 지역축협 및 시·군 축산계

#### □ 다산우 장려금 지급

가. 목적 : 한우생산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적정두수(200~230만두)가 유지될때까지 한시적으로 3산이상의 암소에 장려금 지원

나. 지급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참여한 3산이상의 암소 및 연령감정 결과 3산이상에 해당 된다고 인정되는 암소

#### 다. 장려금 지급액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참여한 암소가 3산이상 송아지를 생산시마다 10만원의 장려금지급
-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과 가축개량사업(등록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암소는 5산부터 20만원의 장려금 지급

라. 문의처 : 관할 지역축협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02-588-9301~5)

#### □ 수소 거세지원사업

가. 목적 : 암소비육을 억제하고 수소 거세비육우에 의한 고급육시장에 대한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 거세사육시 경영비부담을 일정액 보전함으로써 지속적인 한우 고급육 생산을 촉진.

나. 지급대상 : 한우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시·군에서 거세사업 참여를 신청한 수소

다. 장려금 지급액 : 한우거세우 두당 10만원(시·군자체 지원비 별도)

라. 문의처 : 시·군축산계 및 관할 지역축협

#### □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원

가. 목적 : 한우 고급육생산을 유도하기위해 도축시 1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

나. 지급대상 : 한우 수소 1등급(1+ 및 1등급) 출현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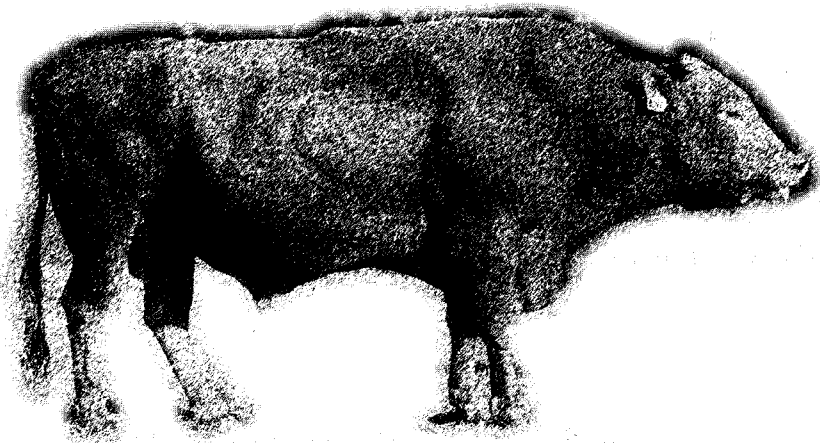
- 다. 포상금 지원액 : A1+, A1등급은 15만원  
                   B1+, B1등급은 12만원 지원
- 라. 문의처 : 축산물 등급판정소 지원과(02-574-2541)

□ 가축공제사업

- 가. 목적 : 각종 재해 및 질병으로 가축이 피해를 입는 경우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여 양축가의 경제적 안정과 생산여건을 보장해 주기위해 실시
- 나. 지급대상 :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공제료(보험료)를 납부한 농가
- 다. 소의 가입연령 : 한우는 생후 만 6개월~13세(젖소는 8세까지)
- 라. 공제기간 : 1년(월단위 가입가능)
- 마. 공제요율 및 공제금액(두당) : 한우의 경우

기본요율	공 제 료		가입금액 1백만원 기준 공제료				비 고
	농가부담	정부보조	정부보조	농가부담	조합지원	계	
2.42%	50%	50%	12,100원	10,100원	2,000원	24,200원	조합부담금은 조합원에 한함.

- 바. 문의처 : 관할 지역축협



##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사양관리

지난호에 이어 2001년 제5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준비를 위한 일정과 사양관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연재하니 평가대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 입식 7개월째의 사양관리

## 1. 사양관리 요령

- 농후사료 급여량 : 비육전기사료 3.5kg이상으로 급여함.  
단, 소의 체중을 보아가면서 늘려가야 함.
- 조사료 급여량 : 볏짚 2.5~3kg + 조사료 0.5~1.0kg정도 급여.
- 총사료 급여량 : 7kg~7.5kg 급여수준(단, 소의 체중에 따라서 가감함)(기준:1두당)

이제 평균체중(5두)이 적어도 255kg이 되어야하고 큰 소들은 285kg이 될 것입니다. 평균 10월생으로 구입하였으니 생후로 따지면 지금 기르는 소는 1년이 지난 소입니다.

소 전체 사육기간으로 보면 1/2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구입한 후로 보면 7개월정도가 된 소입니다.

이제까지 조사료로 배를 튼튼하고, 크게 키운 소는 앞으로 본격적인 체중 늘리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1일당 평균 1kg으로 증체시켜서 1개월에 30kg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한우능력평가대회는 5두중에 3두를 선발하게 되므로 특별하게 성장이 더디거나 이상이 있는 소는 제외를 시킬수는 있겠으나 무리를 사육하는데 있어서는 5두를 골고루 키우는 기술도 중요한 것입니다.

송아지를 구입할 때 10kg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않는 것들이 이제는 50kg이상 차이가 나게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농가는 전체 소가 10kg정도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 습니다. 결국 소를 키우는 사양관리의 기술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의 사양관리 방법보다도 육성기때 조사료를 많이 급여하고 농후사료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기른 양축농가도 많았지만 기존의 관행으로 소를 사육하는 농가도 많을 것 같습니다. 1년생 평균체중이 260kg을 넘어선 양축농가 중에는 관행적인 비육방법에 의하여 소를 사육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비육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직 비육 최성기는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육을 하셔야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육병의 일종인 요결석 증세가 발생한 소에 대해서는 각별히 치료를 해야 하는데 오줌 나오는 부위의 털이 하얗게 색이 변했는지를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줌 나오는 부위의 털이 하얗게 변하였으면 염화암모늄을 복용시켜야 하는데 수의사와도 상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 ○ 입식 8개월째의 사양관리

### 1. 사양관리 요령

- 농후사료 급여량: 비육전기사료 4~4.5kg (체중에 따라 더 급여할수도 있음)
- 조사료 급여량: 볏짚 2g이상, 조사료 0.5~1.0kg정도 급여.
- 총사료 급여량: 7.5kg~8.05kg 급여수준(기준:1두당)
- 주요 증가 부위: 지금은 몸 조직 중에서 지육이 가장 왕성한 발육을 하는 시기입니다.

사료량이 부족하다면 이제부터는 농후사료를 추가하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은 지육, 적육 등 살코기가 최대한도로 많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튼튼하게 배(위장)를 키워 놓았으면 농후사료를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을테지만 갑자기 사료를 너무 많이 급여하지 말고 매일 매일 사료 주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체중측정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눈이 정확하다고 하여도 우형기(체중측정기) 만큼은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가 크는 것을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사양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에 알맞는 사료를 급여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소가 커 보여서 너무 많이 급여하거나 소가 적어 보여서 사료급여를 너무 적은 양을 급여하다 보면 잘 크지 못합니다. 이번 달부터 4~5개월 동안은 체중증가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정한 사료의 양을 충분히 주고 그래도 모자란다고 생각되면 농후사료를 더욱 증가시켜 주어야 합니다.

### □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의 접종표시 및 이동제한 관리비지원 기간 연장

농림부는 예방접종가축의 접종표시 및 이동제한 관리비를 2000년 6월부터 8월말까지 지급토록 하였으나 일부농가에서 기 지급된 배합사료 전표를 미사용한 경우가 있는 한편 예방접종 표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기간을 9월 30일까지 연장 하였다.

## 관련기관 기타소식

### □ 소 기립불능증 대처요령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소 기립불능증은 전염병은 아니고 여름철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일종의 신경 이상증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가. 예방요령

- ① 기립불능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 매일 세심한 관찰을 한다.(특히 뒷다리 등의 이상유무 확인)
- ② 기온 등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위생적인 사양관리 필요
- ③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수 있도록 양질의 사료와 신선한 물을 공급
- ④ 소독철저 및 출입자 통제등 차단 방역을 강화

#### 나. 발생시 대처요령

- ① 갑작스런 다리마비 등 이상증세를 보이면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와 개업수의사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진료하도록 요청한다.
- ② 2차 미생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상이 심화되어 주저 앞기전에 깨끗한 장소로 격리 조치한다.
- ③ 수의사의 진료처방 등에 따라 비타민 B복합제, 칼슘제, 세레늄제, 대사촉진제, 소염제, 항생제, 식염수 또는 5% 포도당등을 집중 투여하되 일과성 치료로 그치지 말고 1주일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실시한다.
- ④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 □ 구제역 재발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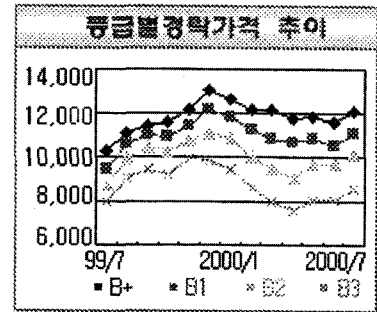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가 경기도내 소, 돼지 사육농가와 개업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울겨울에 구제역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으며, 또 구제역에 대한 홍보는 소의 경우 가축병원이나 유업체, 돼지의 경우 방역본부와 약품대리점을 주축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농가에서도 아직까지 구제역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농가 스스로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방역과 소의 관찰를 철저히 하여야 할것이다

**등급별 경박가격**

▶ 농협서울공판장 (단위: 원/kg)

종류	등급	99년평균	8월평균	9월 21일	9월 22일	전일비
한우	A1+	10,999	13,011	-	12,917	-
	B1+	10,294	12,288	-	11,992	-
	B1	9,852	11,287	11,010	11,017	+ 7
	B2	9,030	10,466	10,232	9,923	+ 309
	B3	8,085	8,847	8,627	8,597	- 30
	평균	8,910	9,924	9,395	9,774	+ 409
암태지	A	3,196	2,813	2,340	2,184	- 156
	B	3,113	2,514	2,081	1,878	- 203
	C	2,987	2,239	1,728	1,624	- 104
	평균	2,934	2,332	1,848	1,788	- 60



□ 올 상반기 한우 다산우 장려금 29억여원 지급

올 상반기 동안 한우 다산우 장려금이 28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부는 올 6월말 까지 한우농가들에게 지급된 다산우 장려금은 2만5천9백76마리분 총 28억3천4백70만원이 지급됐으며 시·도별로는 경남이 10억1천2백2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5억4천5백60만원으로 두 번째이고 전남 4억3천30만원, 전북 2억3천4백60만원, 강원 2억1천4백50만원 이다.

□ 축산폐수의 해양배출기준 강화 계획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축산폐수에 대한 해양배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었으나 부처간 협의단계에서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2003년까지 유보키로 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축산폐수의 해양배출기준이 강화될 것임에 대비기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르 철저히 함은 물론 최대한 자원으로 재활용하여 가급적 해양배출억제를 위해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